

16. 租稅減免規制法中改正法律

法律 第5,038號 1995.12.29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부가통신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조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7조 제1항 본문중 “제조업과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1994년 1월 1일” 다음에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과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1995년 1월 1일)”을 삽입한다.

제9조 제2항중 “100분의5(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를 “100분의5(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고, 중소기업외의 자가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10)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주식양도차익”을 “주식양도차익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제1항중 “외화획득사업(이하 “외화획득사업”이라 한다)을” “외화획득사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선산업을 제외하며, 이하 “외화획득사업”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27조 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선업자로서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24조 제2항중 “제22조 제2항”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3항”으로 한다.

제31조 제8항중 “위탁영농회사가”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중 “건설업·운수업·수산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중 “사업전환중소기업”을 “사업전환중소기업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기업자가 제조업, 유통·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로 하며, 동조 제5항중 “제1항의 규정은”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담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금융기관의 부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재래시장내에서 재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로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운 사업장 또는 유통단지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장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제1항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을 한 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합병등기 일부터 6월내에 재정경제원장관(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부터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을 확인받아 그 명세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제3항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129조”로,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을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농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농업회계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계법인(이하 “농업회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지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농업회계법인(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52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9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외의 공공법인

(과세표준금액)

(세 율)

1억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6
1억원초과 1천6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60조 제2항 제5호중 “협동소조합”을 “사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61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61조 제3항중 “수익사업에서”를 “수익사업(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한한다)에서”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7.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

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⑤별표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호의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금전등의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금전외의 출연자금가액은 출연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제1항 제2호중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을 “동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64조 제1항 제8호중 “동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토지등”으로 하고, 동항 제11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3. 한국컨테이너부드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드공단이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6년 13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

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 제목중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등”을 “사회복지법인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5년”을 각각 “3년”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更生보호공단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중·고·대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내국인이 3년이상 운영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

한 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문화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각호의 문화시설의 이전을 완료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문화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5조 제1항중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을 “농촌근대화촉진법”으로 한다.

제76조 제1항중 “1995년”을 “1996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제

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아 경기대회”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77조중 “부동산”을 “부동산(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78조중 “토지”를 “토지(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80조(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조항을 말한다)의 제목중 “비과세”를 “비과세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2천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추징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③제80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이하 “가계생활자금저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가계생활자금저축 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해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가계생활자금저축 이자소득의 분리과세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조항을 말한다) 제1항중 “100분의 25로”를 “100분의 20으로”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

한다.

제92조의3을 삭제한다.

제9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4(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중에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1996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이 조에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라 한다)한다.

②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주택자금 이자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무주택 또는 1주택소유 세대주의 판정, 세액공제의 신청등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 제1항중 “1995년”을 “1997년”으로 한다

제100조 제1항 제4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2호중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3조 제7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108조 제1항중 “104조”를 “제8호”로 한다.

제111조 제5호 단서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동조 제10호중 “위탁영농회사를”을 “농업회사법인을”로 하며, 동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2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6.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제118조 제2항 제3호중 “제88조”를 “제88조·제92조의4”로 하고,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소득세법 제73조 및 동법 제74조”를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한다.

제122조 본문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로 한다.

제123조 제1항중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

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을”을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별표] 공공법인의 범위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8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5호중 “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하고, 제44호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며, 제101호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38호 내지 제1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과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신설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138.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3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14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

법인 광주비엔날레

14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
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
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
위원회

142.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제109조 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
제원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7항중 “이 법 시행당시 대
도시”를 “대도시”로 하고, “이 법 시행일
부터 1995년”을 각각 “1998년”으로 하며,
동조 제8항중 “1995년”을 “1996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제92
조의4·제118조(제92조의4의 개정부분
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
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
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
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
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
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감면등에 관한 적용
례) ①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②제9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약추징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로 소득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제7조(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
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광업투자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
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
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가가치세등의 면제등에 관한 적
용례) ①제100조·제103조·108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
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업합리화적립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제5항·제92조의4·제118조(제92조의4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수출손실준비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제80조의2 또는 제81조의 제1항 제4호”를 “제80조의2·제81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81조의2”로 하며, 동조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개정이유◇

영세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세중소사업자의 조직화·현대화 및 유망업종으로의 사업전환등 구조개선 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년간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하고,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퍼센트를 특별 감면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부가통신

업·엔지니어링사업·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함(법 제6조 제3항·제7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나. 현재 조선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중 수출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그 지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OECD다자간 조선협정에 따라 수출손실준비금제도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조선산업을 제외함(법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다. 현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다른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기업자가 제조업외에 유통·물류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함(법 제33조).

라. 재래시장내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장을 조성하여 이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및 현대화를 지원함(법 제33조의3).

마. 농업회사법인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년간 감면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전액 면제하고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바. 2002년에 개최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공공법인에 추가하고, 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하며, 조직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 및 건설등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경감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1조·제76조·제100조·제103조·제111조·제112조 및 별표).

사. 일상적인 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함으로써 가계생활자금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법 제81조의2).

아. 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물채광비나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비용하는 인정되는 광업투자준비금제도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함(법 제95조 제1항).

자. 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 감면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서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함(법 제123조 제1항 및 제4항). 〈법제처 제공〉

‘실마’하면 부실시공 ‘혹시’하면 성실시공